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2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8. 26 정 호 용 의 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8. 29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2005. 9. 13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8991호 : 2005. 8. 5)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회기수당 지급기준 조정(제4조)

- 회기수당 : 1일 70,000원 → 100,000원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

○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지급 범위의 규정이 2005. 8. 5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함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5. 9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